

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0. 9. 9.(목)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 목 차 】

1. 거창군 지하수조례안	1 면
---------------------	-----

거창군 지하수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8. 2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8. 30.

II. 제정이유

- 「지하수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III.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 구성인원: 7명 이내
- 위원장: 부군수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 2년

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대상과 제외대상, 산정방법, 납입절차 및 조정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규정함(안 제22조, 부칙)

VI.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7조, 제2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4조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7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나. 예산조치: 수질검사 수수료 4,800천원 확보, 그 밖에 필요한 예산은 수요 발생 시 편성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 27.~2010. 2. 1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1993년 12월 10일 제정된 「지하수법」에 의해 거창군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안 제2장 (지하수 관리위원회)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안 제3장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5) 안 제4장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대상, 산정방법, 납입절차 및 조정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9.3.31>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2008.2.29>

③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08.2.29>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⑤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2.4, 2005.5.31>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2009.5.27>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3.31, 2005.5.31, 2006.9.27, 2007.5.17>

1.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1>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개정 2001.1.16>)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상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16, 2005.5.31, 2008.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2008.2.29>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2008.2.29>

⑧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 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기준·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20조(수질검사 등)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31]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2009.5.27>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2008.2.29>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5.5.31, 2006.3.24, 2008.3.2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05.5.31>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6의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의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2008.3.28>

1. 제7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1의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삭제 <2005.5.31>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개정 2001.1.16>) 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삭제

□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5.10, 2001.3.27, 2001.12.19, 2004.12.3, 2005.11.30, 2006.4.28,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24>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등) ①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6조의4(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을 전국의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300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 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09.12.15>

②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을 관할 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월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측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12.19]

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 구역 안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11.30, 2008.2.29>

③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05.11.30>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개발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제29조(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 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11.30>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1.12.19]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10.8>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4.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30>
[전문개정 2001.12.19]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군수는 법 제3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 제30조의2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②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조례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하수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30]

[별표 8] <개정 2009.4.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39조제1호	350만원
2. 법 제9조의제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3호	500만원
3. 법 제9조의제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4호	400만원
4. 법 제9조의제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법 제39조제4호의2	500만원
5. 법 제9조의제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5호	400만원
5의2. 법 제9조의제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 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5호의2	400만원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	500만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2	500만원
8. 법 제16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3	400만원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4	400만원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5	400만원

11.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7호	350만원
12. 법 제2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법 제39조제7호의2	500만원
1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8호	350만원
13의2.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40조제1호	100만원
13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법 제40조제1호의2	50만원
가. 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른 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00만원
나.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변경신고(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00만원
다.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4.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1호의3	50만원
15.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1호의4	50만원
16.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2호	50만원
17.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40조제4호	300만원
18.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법 제40조제5호	50만원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4. 7] [환경부령 제284호, 2008. 4. 7, 일부개정]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개정 2008.4.7>)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이하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며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측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7>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수질오염실태의 측정방법
5.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질검사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4.7>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제12조 (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7>

1. 음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법 제33 조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2.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만원
3.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3만원

[전문개정 2008.4.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 ② 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새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7.20>

② 삭제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제75조(청구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73조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③제73조·제74조 및 제80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1997.8.30]

제76조(보정요구) ①제73조·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77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8.30]

제77조(결정등) ①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5, 2008.2.29>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제7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31>

②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제79조(청구의 효력등)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8.30]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지방세
고지서
재 중

우체국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bar code

받는 사람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과세기관 홍보란

OO시군구
OCR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분)
(납세자 보관용)

OO시도
OO시군구

납세번호	과세대상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번호	검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과세대상 :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계		

무과내역(과표)	비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 체납세액은 별도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수납인
전화 : 체납세액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수납의뢰서 (금융기관보관용)

OO시도
OO시군구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번호	검	

OO시군구
OCR

영수필통지서(분) (시군구보관용)

OO시도
OO시군구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	과세번호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세자 :

납기내	까지
세액합계	까지
납기후	까지
세액합계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계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고지서 발부기관 :)
(담당자 : tel :)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안내말씀

1. 과세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조례 제 조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3.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1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납부기한부터 1월 경과시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마다 1.2퍼센트의 증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3퍼센트)+증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